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에너지효율의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준, 자동차의 성능 등 세부 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차량구매보조금,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령정보를 소개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1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4
1.1.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4
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념 및 종류 4
1.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 5
1.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8
2. 전기자동차 12
2.1. 전기자동차 구입 12
2.1.1. 전기자동차 보조금 12
2.1.2.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16
2.1.3.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17
2.2.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18
2.2.1. 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18
2.2.2. 전기자동차 충전 20
2.3.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23
2.3.1.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의무 23
3. 하이브리드 자동차 25
3.1.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25
3.1.1.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25
3.1.2.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 감면 25
4. 수소전기자동차 27
4.1.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27
4.1.1.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27
4.1.2. 수소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29
4.1.3.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30
4.2.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31
4.2.1.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31
4.2.2.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32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1.1.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념 및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자동차의 개념

▪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는 제외)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념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에너지소비효율,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조).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태양광자동차

▪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하이브리드자동차

▪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및 아래의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전기자동차의 기준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3호).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전기버스 (중·대형 승합자동차)					
	초소·경·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경·소형**	중·대형 (화물만 해당)	일반 (가)	일반 (나)	일반 (다)	일반 (라)	일반 (마)	2층, 굴절
에너지소비효율 (km/kWh)	5.0 이상	4.2 이상	3.4 이상	4.0 이상	2.3 이상	1.0 이상	2.57 이상	1.59 이상	1.11 이상	1.08 이상	1.06 이상	0.75 이상

▹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이 중 승용자동차 중·대형의 대형 구분은 축간거리 3,050 mm 이상으로 구분함)

▹ 일반 전기버스의 중형/대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승차정원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 일반 전기버스의 구분은 (가) : 중형급 길이 7 m 미만, (나) : 중형급 길이 7 m 이상 ~ 8 m 이하, (다) : 중형급 길이 8 m 초과, (라) 대형급 길이 9 m 미만, (마) : 대형급 길이 9 m 이상으로 구분함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전기버스 중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 2층 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 굴절버스에 각각 해당해야 함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구 분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휘발유	경유	LPG
경형	19.4	24.0	15.5
소형	17.0	21.6	13.8
중형	14.3	18.8	12.1
대형	13.8	16.0	9.7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 경형·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L)
18.0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하며, 이 경우 도심주행 및 고속도로주행 각각의 에너지소비효율은 CD모드와 CS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조화평균하여 산정함

√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7항)

√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함(「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제18항)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4호).

구분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경·소형	중·대형 (수소전기버스)	**경·소형**	**중·대형**
에너지 소비효율 (km/kg)	75.0 이상	75.0 이상	20.0 이상	75.0 이상	12.0 이상

▹ 경형·소형·중형·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너비·높이 기준만 적용함

▹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수소전기버스 중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 수소전기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에 따름

▹ 특수자동차가 기존에 등재된 화물자동차와 세부동일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이 특수자동차의 시험중량은 기존에 등재된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으로 적용함

√ 다만, 중·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차량 중량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① 일반형 덤프형 화물자동차: (차량중량+차량총중량)/2

② 벤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구난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 제8호가목).

저공해자동차 종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입자상물질	측정방법
1종 (무공해)	0g/㎞ 이하	0g/㎞ 이하	0g/㎞ 이하	0g/㎞ 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인증방법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 제8호나목).

<table>
<tr><th>저공해자동차 종류</th><th>사용 연료</th><th>차종</th><th>일산화 탄소</th><th>질소 산화물</th><th>탄화수소 (배기관가스)</th><th>입자상 물질</th><th>측정 방법</th></tr>
<tr><td rowspan="2">제 2 종</td><td rowspan="2">휘발유, 가스</td><td>경자동차, 소형 승용,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중형 화물</td><td>0.625g/㎞ 이하</td><td colspan="2">0.019g/㎞ 이하</td><td>0.002g/km이하</td><td>CVS-75 모드</td></tr>
<tr><td>대형 승용, 대형 화물, 초대형 승용, 초대형 화물</td><td>4.0 g/kWh 이하</td><td>0.35 g/kWh 이하</td><td>0.10g/kWh 이하</td><td>0.01 g/kWh</td><td>WHTC 모드</td></tr>
</table>

※ 위의 기준은 2020년 4월 3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기준이며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적 세부 기준

전기자동차의 기준

▪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 √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 √ 최고속도 : 60 km/h 이상
-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경·소형 승합자동차)
  - √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 √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 √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또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100 km 이상
  - √ 최고속도 : 60 km/h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기준

-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

> ※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
> ※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1.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 부착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이하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라 함)에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유효기간 및 표지발급기관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전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초소형 전기자동차	초소형 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저공해자동차의 표지 부착

"저공해자동차"란?

저공해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①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②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③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른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에서 위의 기준에 맞는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에도 해당합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규격·형태·기재사항 및 부착방법 등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 시장·군수는 위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에 붙일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 위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임을 표시해야 하며,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제2항·제3항).

- 저공해자동차 표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4항,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별표 1).

▹ 표지도안





※ 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함)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여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토록 요청해야 합니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에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 표지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해야 하며, 발급내역을 위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해야 합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사람은 표지를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이미 발급받은 표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2. 전기자동차

2.1. 전기자동차 구입

2.1.1. 전기자동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개요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6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에 규정한 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료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의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다만,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화물 2년/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 전기자동차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구분	내용

전기승용차	공통사항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3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3 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금은 중복지원 가능. 다만, 정액지원(예: 다자녀가구지원 등) 금액은 일정 비율(%) 추가지원 금액을 산정한 이후 마지막에 더하도록 함
	중·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보증수리 기간이 10년/50만km 이상(SOH 65%)인 차량에는 보조금 상한(중·대형 : 580만원 / 소형 : 5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30만원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26.12.31.까지 지원)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전기승합차		- 일반승합차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 소형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대형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 최대 8,500만원, 소형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2와 같음 - 일반승합차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전기화물차	공통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은 중복 지원 가능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대형·중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국비기준 대형 최대 6,000만원, 중형 최대4,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소형·경형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050만원, 경형 최대 77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38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하는 개인, 소상공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부터 3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보급사업 공고는 해당 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 가능)합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전기승용·전기화물만 해당)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함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등 승객 수송,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배정 물량의 최대 5%를 필요 시 우선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

▹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다른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

▪ 보조금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

의무운행기간

▪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다음의 회수기준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국비 환수액을 반납해야 합니다(「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

·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할 경우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음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 추가 지원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를 제출받아 확인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5항).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

▪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 따라서 위의 감면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이 감면되어 교육세도 면제되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 감면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이 됩니다.

전기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취득세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 위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는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3.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 등

▪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3제1호 및 제4호).

▹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보통등록번호판 : 1.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 전기자동차번호판 : 위 등록번호판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사업용·법인업무용 및 긴급자동차는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에 부착하는 번호판

▪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비사업용 보통 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및 별표1).

▪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해야 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항).

▪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및 별표 18).

※ 전기자동차 번호판 규격, 세부기준 바탕문양 및 색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부착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참조).

-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 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3.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 이내일 것(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 상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그 밖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에서 규정한 부착 방법

> ※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등록하기 –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2.2.1. 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전기자동차의 운행 관련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제3항제2호의2,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40% 감면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30% 감면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20% 감면

※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혼잡통행료 감면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

▪ 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 ※ (예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10호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기자동차 주차 관련 지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1항).

▪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전단).

※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장 (5분당)	월 정기권	
			주 간 (09:00~18:00)	야 간 (18:00 ~ 익일 09:00)		주 간 (09:00~18:00)	야 간 (18:00 ~ 익일 09:00)
1급지	400	5,000	-	-	400	20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2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8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4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비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가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는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1시간 초과시부터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함**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단위구획 총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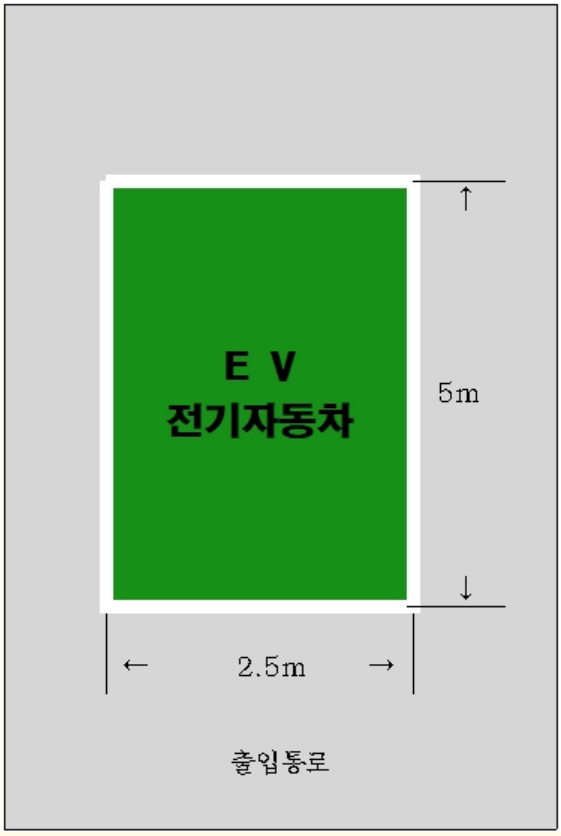
1.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총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함.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따름(「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

①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5% 이상

② 위 ①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2% 이상

2. 충전시설: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함.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기숙사로서 기축시설인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5제2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해야 함(「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의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2.2.2.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충전시설 설치 장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함)는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수량

▪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 충전시설의 종류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함

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 확보

주차구획 확보

▪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

※ 이를 위반하여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충전 방해행위 금지

▪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함)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는 14시간,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을 “급속충전시설”이라 하며,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을 "완속충전시설"이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대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고객으로 합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별표 4 제4호가목).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 충전설비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전기차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의2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 1.에 해당하는 충전설비

※ 위 적용대상별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인터넷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2조제2호 및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 참조]

·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금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하며, 공동주택, 학교시설 등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소상공인이 영업용(개인택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전기차를 신규 구매(´24년 7월 8일 이후 등록 차량에 한함)하고 충전기 설치 부지와 주차면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한되더라도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시 지원 가능합니다.

·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지원하며, 충전기 설치비용[충전기 구매비용, 공사비(캐노피, 볼라드, 스토퍼 등 부대시설 포함), 한전불입금, CCTV(열화상·연기감지 카메라 포함) 등 포함]의 50% 이내에서만 보조금 지원

< 2026년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

충전기 구분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만원)
① 11kW 이상 충전기	240(1기), 220(2기5기), 200(6기 이상)
② 7kW 이상 충전기	(신규) 220(1기), 200(2기5기), 180(6기 이상) (교체) 110(1기), 100(2기5기), 90(6기 이상)
③ 전력분배형 충전기	①~② 용량별 지원단가에 케이블 1기당 30만원씩 추가 지원

비고 1) 사업수행기관이 받는 보조금은 1기당 최대 지원 금액을 넘을수 없으며, 사업수행기관 내 운영사·제조사가 받는 보조금의 비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별도로 정함

비고 2) 전력분배형 충전기는 본체에 추가되는 케이블 1기당 3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하며, 동시에 모든 케이블에서 충전시 합산한 총 용량에 해당하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다만, 동시 충전 시 최소 충전용량은 3kW를 초과할 것)

비고 3) 소상공인이 영업용 전기차(화물, 택시 등) 충전을 위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③ 단가의 70%를 지원함

비고 4) 충전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제조사에, 그 외 설치비용(공사비, 한전불입금 등)은 운영사에 지급해야 함

· 충전시설 점용료 감면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하면 점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66조, 제68조제3호,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제3호).

※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2.3.1.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의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안전성인증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인증

▪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이하 "배터리"라 함)가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함)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다만,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대해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성인증(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인증(변경인증 포함)을 받거나,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5호의3 및 제5호의4).

전기자동차 배터리 식별번호 기재

▪ 전기자동차 등록원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여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적어야 하며, 배터리가 2개 이상 장착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7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9제1항).

1. 24자리 이하일 것

2.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글자로 구성할 것(이 경우 숫자와 글자의 조합으로 하거나 각각으로 구성할 수 있음)

3. 생산시기(연월)를 포함할 것

배터리 정보의 자동차등록증 표시

▪ 전기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는 ①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화재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소유주나 신규 구매자는 자율적으로 마이배터리 홈페이지에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반납 의무

전기자동차 폐차 시 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의 폐지

▪ 기존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했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부터는 배터리를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및 부칙 <법률 제17797호> 제3조).

>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특례**
>
>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8조에 따라 위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 ·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된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5조].

>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하이브리드 자동차

3.1.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3.1.1.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개요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6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4.)에 규정한 사항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지원

>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제도는 2021년 1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세금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환경친화적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하이브리드자동차 세금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2항).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3항).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취득세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

※ 위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소전기자동차

4.1.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4.1.1.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개요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6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에 규정한 사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의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7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9).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차량

▪ 승용차, 버스(저·고상), 화물차(트럭), 폐기물청소차 등 수소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자[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중앙행정기관 제외)]가 보조금 지원 대상입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1.) 참조].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④ 구매 계약일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수소승용차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3분기까지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해야 함(공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함

▪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보조금 지원 금액 및 대상차종(「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차종	지원금액(천원)	비고
수소승용차	22,500	정액보조
수소화물차(11톤급)	250,000	
폐기물청소차	720,000	

▪ 수소버스의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 차량 규모,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저상은 최대 21,000만원, 고상은 최대 26,00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및 보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보조금 집행절차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구매계약 체결 후 수소전기자동차 인도 시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차량등록증 등)에 근거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버스 및 수소트럭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소버스 제조업체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의무운행기간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에게 8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제1호).

▪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회수해야 합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의무운행기간 내 수소전기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수소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수소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해야 합니다(「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4.1.2. 수소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7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8항).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9항).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수소전기자동차 취득 시 세금 감면

취득세 감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화물자동차는 제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5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항).

※ 위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수소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3.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 등

▪ 수소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3제4호 및 제1조의2제4호).

▹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보통등록번호판 : 1.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 수소전기자동차번호판 : 위에도 불구하고 수소전기자동차(사업용·법인업무용 자동차 및 긴급자동차는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에 부착하는 번호판

▪ 수소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수소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비사업용 보통 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 수소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해야 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항).

▪ 수소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및 별표 18).

※ 수소전기자동차 번호판 규격, 세부기준 바탕문양 및 색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부착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참조).

▹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3.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 이내일 것(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그 밖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에서 규정한 부착 방법에 따라 부착할 것

※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등록하기 –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4.2.1.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주차 지원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 관련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습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1항).

▪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합니다(「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본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제3항제2호의2,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40% 감면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30% 감면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통행료 20% 감면

※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혼잡통행료 감면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 이하 같음)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1항).

▪ 수소전기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제4항).

※ (예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10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수소전기자동차 주차 관련 지원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항제3호).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노외주차장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의 기준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수소전기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함)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안전교육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제3항).

▪ 안전교육과정에는 전문교육, 특별교육, 양성교육이 있는데 수소전기자동차 운전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에 따른 대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로 한정함)는 특별교육 대상자이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 시 1회만 받으면 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4호나목).

▪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31 제2호가목).

> ※ 안전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제4항제3호).

> ※ 안전교육 신청
>
> · 안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 사이버교육원 > 법정특별교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2.2.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수소전기자동차의 충전공간 확보

충전 방해행위 금지

▪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는 14시간,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급속충전시설”이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이 시설을 말하며,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은 "완속충전시설"이라 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